

4-5-11 학생증 발급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신분을 표시하는 학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에 재적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서식) 학생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3.2.28.>

1. 제 1면은 학교로고, 사진, 대학교명, 학부, 학번, 성명, 바코드를 기재하여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.
2. 제 2면은 학생증의 기능과 유의사항, 분실 시 신고 안내전화 등을 명시한다.

제4조(발급권자) 학생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.

제5조(발급시기) 학생증은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과 동시에 발급한다.

제6조(발급) 학생증은 학교와 해당은행과의 학생증 발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학교는 학생증카드신청서와 학생에 대한 자료를 해당은행으로 전송하고, 해당은행에서는 학생증을 제작 발급하며, 발급된 학생증은 학생처에서 학생에게 배부한다.

제7조(재발급) ① 재입학의 경우와 학생증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재발급한다.

② 재발급은 학생이 해당은행에 가서 신청한다.

제8조(학생증의 무효 및 반납) 학생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.

1.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
2. 졸업, 퇴학, 제적 되었을 때
3. 기재·날인 사항을 임의로 정정 또는 가감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